제889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 항공유 품질기준 마련(신설) ㅇ 항공휘발유(경비행기용), 항공터빈유(대형항공기용)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▶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별표	1.비중요
2	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·공개(신설) ㅇ 축산물 거래가격의 가격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축산물 유통업자에게 거래가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축산물의 거래가격 공개 ▶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	1.중요
3	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(신설) o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마련 - 지정기준 : 교육과정 적정성, 교육시설 보유 적절성, 전문교수요원 확보의 적절성,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▶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성능점검자에 대한 교육 신설(신설) ㅇ 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자 교육의 종류 및 주기, 교육기관, 교육내용, 교육시간 및 방법 규정 – (종류) 신규교육 16시간과 정기교육(3년마다) 8시간 – (교육기관) 한국교통안전공단, 자동차검사·정비단체,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 단체 중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▶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6	1.비중요
5	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 공표요건 및 공표방법 규정(신설) ㅇ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요건(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위법 사실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) 규정 ㅇ 공표를 명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(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 고려 기간 조정 가능)하도록 규정 ▶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5조, 제4조 2.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방법의 구체화(신설) ㅇ 사업장 및 전자매체의 ▲공표장소, 공표기간 및 양식 등 세부절차, ▲공표명령 이행결과 보고의무 규정 ▶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	1.중요 2.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와 절차 규정(신설) ㅇ 1차 이행촉구(10일 이내 기간), 2차 이행촉구(10일 이내 기간), 법률상 조치(재정지원의 중단, 과태료 부과) 등 규정 ▶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12조	
6	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 생물학적동등성 평가 판정기준 강화(강화) ㅇ 치료영역이 좁은 약물의 국제조화된 동등성 판정을 위한 동등성 판정기준 개선 및 적용 성분 추가 - 치료영역이 좁은 약물에 대하여 동등성 비교평가 항목의 신뢰구간을 강화 -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을 추가하고 강화된 판정기준 적용이 필요한 12개 성분 규정 ▶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17조	1.비중요
7	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주유취급소의 건축물 등의 제한(강화) ㅇ 주유취급소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추가하고,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 신설 ▶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10조	1.비중요